

제 397호

1973.8.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덕 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320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3
◎ 교 시	
제 14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과 지적승인..... 3
제 143 호 :	도시계획시설 (중·고등학교) 결정과 지적승인..... 4
제 14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4
◎ 사 령	5
◎ (정정)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933

규 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규칙은 이에 공포한다.
1973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20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시행규칙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 1호 급수증별 구분표상 2. 영업용제 1종상 제 17호 사립대학부속병원란을 삭제하고, 3. 영업용제 2종상 제 2호업종란의 외원앞에 사립대학부속병원란을 삽입한다.
부 칙
이규칙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과 지적승인
1. 당사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겠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호(73.4.4)에 의하여 고시한다.
2. 판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3. 8. 23
서울특별시장

가. 가 모 제 회 시 실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축원	면적	기	중	비고
채지	소로	4	160	4	50	용제동 43-72	용제동 239	
남초	"	4	152	4	290	용제동 219	용제동 114	
변경	"	4	152	4-6	290	용제동 219	용제동 114	토목일부착륙
신설	"	3		6	70	용제동 42-5	용제동 43-6	
채지	"	4	163	4	30	용제동 177	용제동 171	
남초	"	4	154	4	90	용제동 203	용제동 137	

구분	종류	번호	축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년경	소로	3 154	6	80	용	계	동	203	용	계	동	172	위치 변경확복
당초	"	3 305	6	510	용	계	동	83	용	계	동	17	
변경	"	3 305	6	510	용	계	동	83	용	계	동	17	일부위치변경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3 호 도시계획시설 (중, 고등학교) 결정 과지적승인</p> <p>1. 도시계획시설 (중, 고등학교) 결정과 지적승인용 다음과 같이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p> <p>가. 도시계획학교 시설결정조서</p>					<p>판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p> <p>1973. 8. 23</p> <p>서울특별시장</p>								
순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명지당 고등학교			서대문구홍은동356-11외7필지		15,009㎡							
<p>별첨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p>													
<p>◎ 서울특별시고시제 14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p> <p>서울도시계획시설 (도로) 의 지적용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이틀 고시</p> <p>한다.</p>					<p>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3. 8. 27</p> <p>서울특별시장</p>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부원	연장	기점	중점	비고
신설	데르	1	4	35-37	3,500	서울역광장	실당동광장	제 16 호 관장부분 가각전세및 로륙 일부확장
<p>별첨 도면표시와 감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사 경</div>								
<p>◎ 1973. 8.20.</p> <p>소년기술원 지방행정 주 사 신 영 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소년기술원 지방행정 사 부 관 이 글 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1973. 8.23.</p> <p>하 수 파 지방토목 기 사 보 김 영 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1973. 8.24.</p> <p>구회정리1과 지적기사보 유 연 흥 중로구군부를 명함.</p> <p>중 로 구 지적기사보 서 관 수 성동구군부를 명함.</p>						<p>성 동 구 지적기사보 서 태 용 마포구군부를 명함.</p> <p>도 봉 구 지적기사보 안 흥 기 중로구군부를 명함.</p> <p>마 포 구 지적기사보 장 판 전 천호날장소군부를 명함.</p> <p>관 약 구 지적기사보 조 원 성 도봉구군부를 명함.</p> <p>은평출장소 지적기사보 김 진 천 영등포구군부를 명함.</p> <p>천호출장소 지적기사보 김 주 복 관악구군부를 명함.</p> <p>동대문구 지적기원 심 의 복 새정과군부를 명함.</p> <p>성 동 구 지적기원 최 서 식 도봉구군부를 명함.</p> <p>성 동 구 지적기원 장 하 섭 양서출장소군부를 명함.</p>		

도봉구 지적기원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김희영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 기사보	이영길
성북구 지적기원 신호출장소근무를 명함.	이택희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지적원	서희석
용산구 지적기원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조경은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원	김영희
영등포구 지적기원 북구근무를 명함.	유호	세정과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지적원	이원재
은평출장소 지적기원 관악구근무를 명함.	장동익	성동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지적원	송명근
영등출장소 지적기원 용산구근무를 명함.	김훈주	중구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지적원	김외구
동대문구 지적기원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박진상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영등출장소 지방지적원	김연재
은평출장소 지적기원 영등출장소근무를 명함.	구년완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지적원	김기환
동대문구 지적기원 성북구근무를 명함.	박시준	성북구근무를 명함. 세정과 지방지적원보	김성자
양서출장소 지적기원 은평출장소근무를 명함.	이상운	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원보	정태근
성동구 지적기원 영등포구근무를 명함.	박전수	성동구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지적원보	성석현
세정과 지방지적원 관악구근무를 명함.	박영환	동대문구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지적원보	박외영
종로구 지방지적원 마포구근무를 명함.	임동수	성북구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지적원보	최강섭
중구 지방지적원	방해용	마포구근무를 명함.	

<p>판 악 구 지방지 적 기 원 보 확 용 근 동대 문구 근무를 겸함. 복악공원 농림기사 조 두 환 관리사무소 지방농림기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복악공원 관리사무소근무를 명함. 서 위생처리장 부 기계기사보 강 성 수 지방기계기사로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서부위생처리장근무를 명함. 북 옥제사인소 농림기원 우 해 경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5호봉을 급함. 북구녹지사업소근무를 명함. 자 동 차 운 수 지 방 생 설 사 이 료 사업소 (의 위 해 제 함) 주 사 부 직 을 명 함.</p>	<p>용산구 근무를 겸함. ◎ 1973. 8. 25. 동대 문구 지방농림 농 회 중 서기보 시 기 보 정북구 근무를 명함. 이 총 조 지방기세원(9 등급)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근무를 명함. 을 지 용 지방전기보조수사보(13등급)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근무를 겸함. ◎ 1973. 8. 27. 포 광 과 지방토목 검 성 환 기사보 시 사 보 원예의하여 그직을 면함. 한강건설소 지방서기관 검 정 참 사 집 소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장에 도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p><경 정> 시보제 396 호 (73. 8. 23) 에 제 제 공포한 서울특별시 제 1 회 지하철공채 조례중 다음과 같이 착오가 있기 정정함.</p>	<p>1. P. 21-5 * 서식 7 * 은 * 일 * 조제 1호서식 * 의 오기임. 2. P. 21-6 지하철공채전부는 * 일 조제 2 호서식 * 의 기재가 누락됨.</p>